플러스 단기멀티알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변경사항

1.펀드명 : 플러스 단기멀티알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2.정정사유 :
1)규약
①클래스 추가(AG, CG)

2)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①클래스 추가(AG, CG)
②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3.변경내용
<규약>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클래스 추가 (AG, CG)	①~②(기재 생략) ③(기재 생략) 1.~11.(기재 생략)	①~②(현행과 동일) ③(현행과 동일) 1.~11.(현행과 동일) 12. 종류 AG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있고,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13. 종류 CG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없고,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제10조(수익증	클래스 추가	①(기재 생략)	①(현행과 동일)

권의 발행 및 예탁)	(AG, CG)	1.~11.(기재 생략) ②~⑤(기재 생략)	1.~11.(현행과 동일) 12. 종류 AG 수익증권 13. 종류 CG 수익증권 ②~⑤(현행과 동일)
제39조(보수)	클래스 추가 (AG, CG)	①~②(기재 생략) ③(기재 생략) 1.~11.(기재 생략)	①~②(현행과 동일) ③(현행과 동일) 1.~11.(현행과 동일) 12. 종류 A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0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15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1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4 13. 종류 C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0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86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1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4
제40조(판매수수료)	클래스 추가 (AG, CG)	①(기재 생략) ②(기재 생략) 1.~2.(기재 생략) 3. 종류C수익증권, 종류C-e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f 수익증권, 종류C-w 수익증권, 종류S 수익증권, 종류 S-p, 종류 C-p1(연금저축) 수익증권, 종류 C-p2(퇴직연금) 수익증권 : 없음 ③~⑤(기재 생략)	①(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1.~2.(현행과 동일) 3.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판매회사는 납입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에서 판매수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4. 종류C수익증권, 종류C-e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f 수익증권, 종류C-w 수익증권, 종류S 수익증권, 종류 S-p, 종류 C-p1(연금저축) 수익증권, 종류 C-p2(퇴직연금) 수익증권, 종류 CG 수익증권 : 없음 ③~⑤(현행과 동일)
			부칙 (변경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4월 29일부터 시행

			한다.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클래스 추가(AG, CG)	주석사항 ·생략된 종류(Ci, Cf, Cw, Sp, Cp1, Cp2)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석사항 ·생략된 종류(Ci, Cf, Cw, Sp, Cp1, Cp2, AG, CG)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1)과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세액공제(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1)과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세액공제(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클래스 추가(AG, CG)	-	클래스 추가 AG(BO835), CG(BO836)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클래스 추가(AG, CG)	-	클래스 추가 AG(BO835), CG(BO83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사항 추가	추가	2017.04.29. ①클래스 추가(AG, CG) ②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클래스 추가(AG, CG)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붙임1> 참조 **나. 종류형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붙임2> 참조 **나. 종류형 구조** 클래스 추가 AG: 선취판매수수료가 있고,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CG: 선취판매수수료가 없고,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클래스 추가(AG, CG)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붙임3> 참고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붙임4> 참고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나. 과세** (4)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5)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세액공제(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나. 과세** (4)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5)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세액공제(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클래스 추가(AG, CG)	주석사항 ·생략된 종류(Ci, Cf, Cw, Sp, Cp1, Cp2)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석사항 ·생략된 종류(Ci, Cf, Cw, Sp, Cp1, Cp2, AG, CG)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1)과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세액공제(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1)과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세액공제(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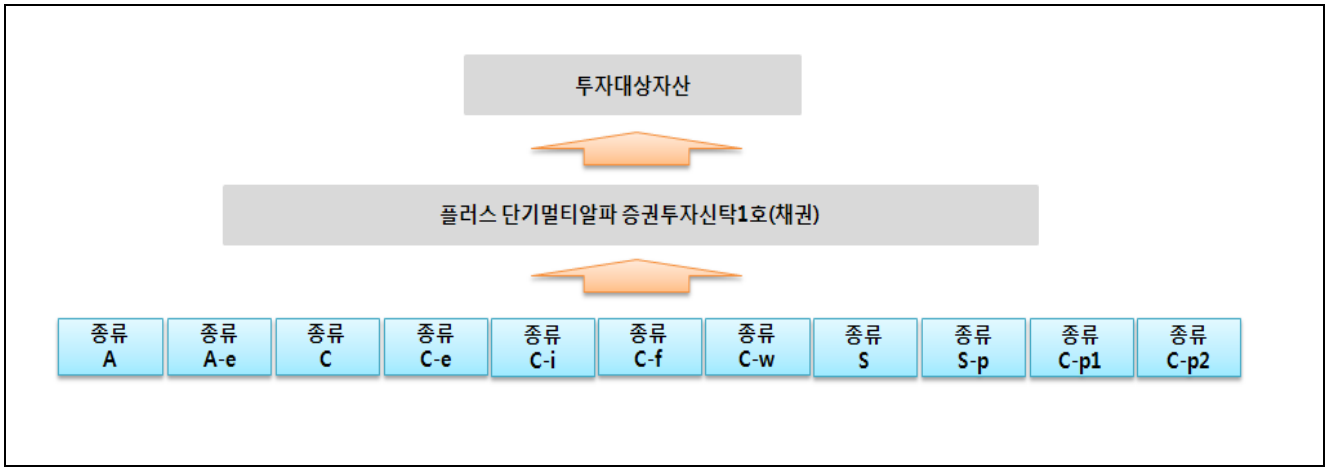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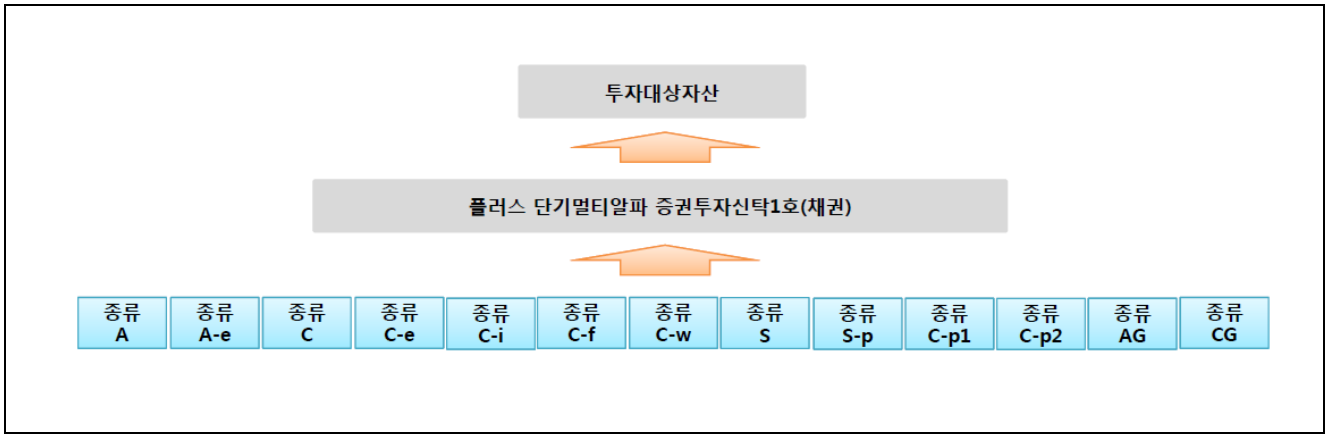

<붙임3>신설 클래스만 기재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연간, %)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G	선취판매수수료가 있고,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0.15% 이내	없음	없음	없음
CG	선취판매수수료가 없고,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1)선취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0.2%이내(A-e 클래스의 경우 0.1% 이내, AG 클래스의 경우 0.15% 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4>신설 클래스만 기재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용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 비용
AG	0.10	0.115	0.015	0.014	-	0.2440	0.2440	-
CG	0.10	0.186	0.015	0.014	-	0.3150	0.3150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AG	39,998	91,590	148,914	317,779
CG	32,338	98,981	172,911	390,140

주6) 종류 AG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15%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15%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